

정부회계 11판 1쇄 정오사항(2026년 4월 2일)

※ 정오사항은 밑줄로 표시하였습니다.

위치	수정 전	수정 후
51쪽 하 10줄	그런데 모든 <u>국가</u> 채무부담행위를	그런데 모든 <u>국고</u> 채무부담행위를
88쪽 하 2줄	차이금액이 <u>1원</u> 을 초과하고,	차이금액이 <u>1억 원</u> 을 초과하고,
103쪽 상 10줄	공정가액을 <u>취득원가</u> 로 할 수 있다.	공정가액을 <u>처분대가</u> 로 할 수 있다.
109쪽 상 6줄	‘외회 <u>자산</u> 평가손익’의 과목으로	‘외회 <u>부채</u> 평가손익’의 과목으로
109쪽 상 8줄	반면에 공정 <u>가치</u> 로 측정하는	반면에 공정 <u>가액</u> 으로 측정하는
117쪽 하 5줄	<u>식한다</u> . 다만, 보험료납입의 유예 등의	<u>인식한다</u> . 다만, 보험료납입의 유예 등의
140쪽 상 1줄	국가의 재무제표를 비롯한 <u>결산서</u> 는	국가의 재무제표를 비롯한 <u>결산보고서</u> 는
145쪽 하 1줄	<u>22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재정상태표상</u>	<u>22 국고채무부담행위 중 국고채무부담행위액도 재정상태표상</u>
147쪽 하 1줄	<u>국가</u> 채무부담행위액이라는 부채를 재정상태표에	<u>국고</u> 채무부담행위액이라는 부채를 재정상태표에
161쪽 상 2줄	( <u>공중</u> 자금관리기금)	( <u>공공</u> 자금관리기금)
172쪽 상 14줄	<u>결산서</u> 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	<u>결산보고서</u> 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
186쪽 하 2줄	‘재원의조달및이전’에 표시하고, <u>특별회계</u> ,	‘재원의조달및이전’에 표시하고, <u>기업특별회계</u> ,
246쪽 하 2줄	개정 국가회계기준을 적용한 국가 <u>결산서</u> 가 아직	개정 국가회계기준을 적용한 국가 <u>결산보고서</u> 가 아직
246쪽 하 1줄	향후 국가 <u>결산서</u> 가	향후 국가 <u>결산보고서</u> 가
259쪽 하 3줄	정부내 <u>전입금</u> 은	정부내 <u>자산수증</u> 은
259쪽 하 2줄	정부내 <u>전출금</u> 금액과	정부내 <u>자산기부</u> 금액과
265쪽 하 4줄	... 정하였다. ( <u>여기에 내용 추가</u> ) 한편	... 정하였다. <u>그리고 2023년부터 「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·재무회계 운영규정」으로 통합하여 이를 적용해오고 있다.</u> 한편
267쪽 상 1~3줄	「 <u>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처리지침</u> 」과 「 <u>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</u> 」을 정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회계처리를 할 때 <u>동 지침과 규정</u> 을 적용하면 될 것이다.	「 <u>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·재무회계 운영규정</u> 」(행안부훈령 2023.1.1. 시행)을 정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회계처리를 할 때 <u>동 규정</u> 을 적용하면 될 것이다.
323쪽 하 2줄	「 <u>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</u> 」에서 규정하고 있는데,	「 <u>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·재무회계 운영규정</u> 」에서 규정하고 있는데,
325쪽 상 7줄	비교환수익은 사업수익에서 제외한다.	비교환수익은 <u>일반수익이므로</u> 사업수익에서 제외한다.
325쪽 상 12줄	<u>순자산변동표의 순자산 증가항목</u> 으로 처리한다.	<u>일반수익(정부간이전수익)</u> 으로 처리한다.
345쪽 상 1줄	「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」	「 <u>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·재무회계 운영규정</u> 」

정부회계 11판 1쇄 정오사항(2026년 4월 2일)

위치	수정 전	수정 후
345쪽 상 12~14줄	⑤ 특정 사업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운영보조 목적의 보조금 등은 사업수익으로 <b>보며, 특정 사업에 사용될 자산의 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자본보조 목적의 보조금 등은 사업수익에서 제외하고 순자산 증가항목으로 처리한다.</b>	⑤ 특정 사업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운영보조 목적의 보조금 등은 사업수익으로 <b>본다.</b>
380쪽 하 3줄	- 20×1년 기초순자산 <b>금액은</b> ₩300,000이다.	- 20×1년 기초순자산 <b>보고금액은</b> ₩300,000이다.
381쪽 상 10줄	- 20×1년 중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받은 자본보조금은 ₩100,000이다.	〈 삭제 〉
385쪽 하 12줄	수령하면 사업수익으로 본다( <b>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 제14조</b> ).	수령하면 사업수익으로 본다.
385쪽 하 9~10줄	<b>사업수익에서 제외하고 순자산 증가항목으로 처리한다(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 제14조).</b>	<b>일반수익(정부간이전수익)</b> 으로 처리한다.